

등록번호	20220953
최초등록일	2022.09.20.
최종등록일	2024.10.11

[금솔] 정보공개서

금목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금목정

< 주의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 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333, 11층 (대봉동, 대백프라자)
전화	☎ 053-420-8031
대표 E-mail	gownduq@naver.com
담당부서	프랜차이즈본부 ☎ 053-420-803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ı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Ш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본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Ш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의 선고	10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1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2) 계약이행보증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8) 가맹금 분납 제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0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35
VI.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33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7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활동 자문 신용 제공 등 내역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_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40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4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 기준 	

별첨: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21년 ~ 2023년)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금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333, 11층 (대봉동, 대백프라지			동, 대백프라자)	
금목정	법인 설립등기일	사약		대	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百 千 公	-	20)19.10.01.	임	무결	구결 053-420-80		_
	사업자등록번호		444-08-013	817	법인	등록번호		_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없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해당 없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에	해당 없음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영업표지명)	금솔	
상호	금솔 000점	
상표	금술	◆ 상표 출원번호: 4020210237976 (출원일자: 2021.11.23.) ◆ 상표 등록번호: 4018600800000 (등록일자: 2022.04.22.)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합계	부채합계	자본합계	매출액	원 이 이	당기 순이익
2021년	182,188	129,296	52,892	388,290	19,962	28,027
2022년	125,225	74,668	50,557	478,801	29,168	34,965
2023년	114,177	52,898	61,279	486,951	30,148	35,406

2)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크스 H	ما ت	원 기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무결	대표	2019.10 현재	금목정 대표	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八省	상근	비상근	수천구(3)
2023년 12월 31일	1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동안 [금솔] 외에 가맹 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가맹본부 의 사용기간)
音室	사용권	출원: 2021.11.23. 등록: 2022.04.22.	출원번호 4020210237976 등록번호 4018600800000	임재백	2032.04.22. (2032.04.22.)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 · 가맹점 소재지에서 영업을 위해 위 상표가 표시된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 설치 및 사용
 - ·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 영업을 위하여 위 상표를 사용
 - · 기타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상표의 사용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금솔] 가맹사업 현황

- 1. [금솔]을 시작한 날: 당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일 현재 가맹점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금솔]과 같은 한식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솔]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금목정	금솔	임무결	\sim 01 M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333, 11층 (대봉동, 대백프라자)

3. [금솔] 업종

영업표지	O E	종
정심표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금솔	한식	비빔밥, 냉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1 A	2021.12.31.			4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0	0	0	0	0	0
2022년	0	0	0	0	0	0
2023년	0	0	0	0	0	0

6. [금솔]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금솔]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사중/하루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성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1 世	/ 8 오/ 이금	3 월표시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2023년 12월말 현재 가맹점이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2023년 연간 평균 매출액에 관 한 자료는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	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비고	
	/ I O II I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0	해당 없음							
서울	0	해당 없음							

부산	0	해당 없음
대구	0	해당 없음
인천	0	해당 없음
광주	0	해당 없음
대전	0	해당 없음
울산	0	해당 없음
세종	0	해당 없음
경기	0	해당 없음
강원	0	해당 없음
충북	0	해당 없음
충남	0	해당 없음
전북	0	해당 없음
전남	0	해당 없음
경북	0	해당 없음
경남	0	해당 없음
제주	0	해당 없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금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가 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해당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금솔] 가맹점 관리를 위한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리 가맹점수		
해당 없음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 체결	계약 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에 [금솔]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에 관한 자료 는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용(단위: 천원 미포함)	비고	
, _	, –	, -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i
광고	해당 없음					
판촉	해당 없음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가입비, 신규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KB국민은행 가맹금예치서비스를 통해 전국 KB국민은행에 예치하 여야 하며 해당은행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KB국민은행	수성교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296	1599-9999

- 가맹금 예치 시 당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KB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세한 신청 방법은 당사에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귀하는 또한 KB국민은행에서 발급한 가맹금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	해당 없음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해당 없음	
보험기간	해당 없음	
보험금액	해당 없음	
보장범위	해당 없음	
지급조건	해당 없음	
보험금의 수령절차	해당 없음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 없음						

3. 형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금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차, 별도 공사 및 별도 구매 사항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영업지역, 점포의 위치, 구조 및 규모, 영업 시작까지의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33,000				
가입비	16,500	계약 체결 시	영업 개시 이전까 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	반환 시 당 사에서 정한 손해금액을
신규 교육비	16,500	계약 체결 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준비 등에 소요된 비용	군에 급액들 공제 후 반 환

2) 계약이행보증금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 시	계약상 금전 미지급, 가맹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발생 등

-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의 손해배상액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하는 금 원입니다.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잔존 채무, 손해 배상액 등을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 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36,000	
가입비	16,500	
신규교육비	16,5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VAT 없음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브	기그리사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구분 지급대상	총금액	3.3m² 당	기비기원	인선소신	비교	

합계		99,050	3,302			99㎡(30평) 기준
인테리어	(당사의 승인 후) 자율 선정	49,500	1,650	계약 시 30% 착수 시 40% 완료 시 30%	공사 3일전 계약취소	99㎡(30평)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650천원 추가 부담
간판과 벽메뉴판 등	(협력업체)	5,500		별도 협의	별도 협의	전면간판, 벽메뉴판, 실내 사인물 등
주방 설비 및 집기	자율 선정	27,500	917			싱크대, 작업대, 후드와 덕트, 냉장고, 제빙기 등
홀비품	자율 선정	9,900				의·탁자, 포스기 등
영업물품	자율 선정	1,650				유니폼, 메뉴판 등
초도상품	자율 선정	5,000				식자재, 음료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별도 구매 및 공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별도 구매사항: 음향기기, TV, 냉난방기, 소방기구, 커피머신 등
 - ** 별도 공사사항: 철거관련, 바닥, 급배수, 전기승압, 외부 확장 덕트, 소방 등
-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가맹점희망자의 요청에 의한 당사의 승인 후 가맹점 희망자의 자율적 업체 선정으로 당사의 기준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리고 당사에 점포 3.3㎡(평)당 이십이만원(₩220,000원, VAT 포함)을 인테리어 다지 인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 선정 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며, 입지 선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1 -1 -1 -1	① 상담 및 입점 예정지 파악
가맹희망자	② 현장 조사 및 상권 분석 ③ 최적의 입지 선정

○ 점포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희망자에 있습니다. 즉 점포 양수에 대한 계

약과 건물주와의 계약 등은 가맹희망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맹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요청에 의해 점포 개발 업무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상 권분석 등에 대한 자문은 입지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로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 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19세 이상일 것 · 가맹점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귀하가 [금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와 물품 등이 필요합 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8) 가맹금 분납 제도
-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판촉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 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편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지급금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2.2%(부가세 포함)	익월 5일	반환 없음	가맹점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	
보수교육비	가맹본부	회당 22만원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취소 시	교육 진행비로 사용	필요 시 협의 후 실시
상품(행사)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25%, 전체가맹점 75%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계획 취소 시	광고비로 사용	가맹점 부담금은 전분기 총매출액 비율 따라 안분(신규점은 평균 적용) ※가맹점 50% 이상 동의 시 진행
전국(지역)단 위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항목별 실비부담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계획 취소 시	판촉물 제작 등에 사용	기념품, 현수막, 전단지 등 ※가맹점 70% 이상 동의 시 진행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 등 교체 비용	가맹본부	실비부담	협의 결정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점포환경개 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편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광고와 판촉 분담금은 광고는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은 가맹점 70% 이상 동의시 발생합니다. ☜ 기준 이상의 동의가 없더라도 별도 약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판촉 분담금의 경우는 동의한 가맹점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 이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가맹본부는 [금솔] 가맹사업 및 점포의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할 목적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귀하는 가맹본부의 지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감독·시정권을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가입비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단, 계약 연장 시 인테리어 전체 또는 부분 리모델링, 장비 교체, 외·내부사인물 수정 등 필요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인 경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입비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최초 계약기간인 경우 가입비의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최초 계약기간인 경우 가입비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금솔]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귀하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양수인은 신규교육 참석과 신규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점포의 영업 및 운영을 중지,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 및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고, 가맹 본부가 제공한 설비, 비품 등 영업 관련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1일당 삼십만원 (₩3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 철거와 제거 비용은 계약이 만료 혹은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사용중지와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련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 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과 별도로 계약 종료 시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영업비밀이 수록된 서면, 이동저장장치, 매뉴얼 등이 있는 경우는 즉시 당사에 반 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전화번호 안내와 포털사이트 등록을 취 소하고 기타 홍보사이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귀하는 [금솔] 계약과 경영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또한 이를 사용 및 활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당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반품이 안됨을 알려드리며, 만약 특정 물품의 과다 재고로 소진이 불가능하고 반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정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부분 반품이 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금솔]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 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금솔] 운영과 관련하여 상품과 원·부재료에 대하여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품목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2023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자료는 없습니다.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보건	년인 <u>ㅂㅋ(단케)</u>	상한	하한	L
	해당 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금솔]을 시작하거나 경영 중에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 없음				2023년 기준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금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2023년 기준

2) 당사가 [금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2023년 기준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준수여부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빔밥	전주비빔밥 전주육회비빔밥 전주돌솥비빔밥 전주돌솥육회비빔밥 콩나물비빔밥			
함흥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육회비빔냉면 물비빔면	강제사항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기타	육회물회(여름특선) 육회덮밥 김치부대찌개 얼큰돼지찌개 뚝배기불고기 떡만둣국 손만두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계약 해지
협의로 정하	는 사항			

- 귀하가 지정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정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 한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아래의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유사 경쟁업체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	제공되는 모든 품목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3월 역 8 위한 세탁 에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 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전주비빔밥: 10,000 전주육회비빔밥: 12,000 전주돌솥비빔밥: 11,000 전주돌솥육회비빔밥: 13,000 쿨냉면: 11,000 비빔냉면: 11,000 육회비빔냉면: 13,000 물비빔면: 11,000 육회물회(여름특선): 13,000 육회덮밥: 12,000 김치부대찌개: 9,000 얼큰돼지찌개: 9,000 뚝배기불고기: 10,000 	권장 가격 변동 시 별도(서면, 카톡 등) 통보	2024년 4월 기준

• 떡만둣국: 9,000	
• 손만두: 6,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만 집중 점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금솔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반경 2km당 1점포 원칙하에 행정구역,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리, 상권의 특성, 점포 앞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경계선은 불포함)

○ 단, 영업지역 안에 존재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쇼핑몰, 역사, 터미널, 대학교 등의 특수 공간과 장소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 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 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 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금솔]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 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 In-shop(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의 내부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 임대인의 MD개편 등의 사유로 당사와 무관하게 점포의 이전, 리뉴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미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금솔]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 로부터 3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전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와의 거래상 또는 계약상 채무를 모두 변제
 - ② 기타 당사와 협의된 사항 이행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가맹계약서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갱신요구 거절 사유	비고
5. [금솔]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금솔]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가맹계약서

- 4)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②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절차	동의절차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 이 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5)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2개월 유예기간 경과 후 해지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합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계약 해지 사유	비고
1.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금솔] 영업방침에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당사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하여 당사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4. 귀하 또는 귀하의 상속인 또는 포괄·특정승계인이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금솔] 가맹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영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지분권자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5. 부도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당사의 가맹사업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참조
6. 지정된 상품과 재료를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7. 당사의 영업정책을 거부 또는 철회하라고 선동하는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판촉·광고 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당사가 정한 품질과 서비스 기준 등을 위반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 기타 가맹계약상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즉시 해지 가능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가맹계약서 제32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비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	
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	
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계약서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참조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	
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	
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	
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및 신규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부담과 신규교육 참석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후의 계약갱신은 계약갱신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신규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과 신규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등을 하도록 하기위해서는 1개월 전에(상속의 경우는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속인 등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가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또한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 및 신규교육비 부담과 교육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금솔]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당사에게 서면으로 경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	----

관련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무이
점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그런거 하느는 1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영업시간을 협의 결정하고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①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특별한 사정으로 2일 이상 5일 이하 연속하여 휴업 시 사전에 유선으로 통지하고 6일 이상 장기간 휴업할 경우 사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 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 직접 근무 여부	점주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영업장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자	비고
원·부재료 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가맹본부가 지정한 원·부재료 사용과 구매 경로	필요시	프랜차이즈 본부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매장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품질관리 등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금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 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丁七	7879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TH 설사	미꾸	
광고 행사	상품(행사) 광고	25%	75% (가맹점 전분기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집행내역 통보	대중매체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 광고행사는 가맹점50% 이상, 판촉행사는가맹점 70% 이상 동의		
판촉 행사	상품할인, 멤 버십 포인트 와 판촉물 제공 등	통일적 판촉행 사를 위한 디자 인 제작 등 판 촉기획 비용	상품의 할인·포인 트 비용,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비용 및 현수막·전단·카 탈로그 제작·배포 비용 등	가맹점 70% 이상 동의 시 진행함 및 기준 이상의 동의가 없더라도 별도 약정에 의해 실시할 수 있고 또한 판촉행사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시 진행함 및 기준 이상의 동의가 없더라도 별도 약정에 의해 실시할 수 있고 또한 판촉행사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만으로 진행할 수	이벤트 행사 등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당사와 사전 협의 후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조리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및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사용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자료 및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 개점 전 가맹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 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입비(IV-1-1)의 40%
 -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가입비(IV-1-1)의 60%
 - · 계약 체결 후 7일 초과: 가입비(IV-1-1)의 80%
-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 금으로 오백만원(₩5,0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 3/4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영업상의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

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요비용은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소요비용)	
합계	합계			
가맹희망자 문의	·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가맹희망자 상담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곳 이하 현황 포함)가맹계약서 제공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상권분석, 후보입지 선정 · 후보입지 조건 검토 및 입지 확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D-35~31	· IV.가맹점사업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	
가맹금 예치 · 지정은행에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예 치		D-30	의 부담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27(2일)		
현장공사 착수	· 인테리어 공사 등 실시	D-26~2(20일)		
신규교육 실시	신규교육 실시 · 점포운영 등 교육 실시			
집기 등 설치	집기 등 설치 · 홀비품 등 설치			
현장교육 실시	장교육 실시 · 직원 현장 파견 후 교육 실시			
가맹점 개점	·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 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불가한 경우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의해 최종 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ㅇ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비용부담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제외사유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당사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 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지원	가맹점 개점 시 지도요원 파견	가맹점 개점	1일(개점일 원칙)		
판촉지원	가맹점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인쇄물 등 지원	가맹본부가 필요하다 별도의 계획		소요되는 비용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통상적인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가 맹점사업자의 요청으로 하는 경영지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조리,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 리, 회계 등 가맹 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금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금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및 기간	필수교육 여부
신규교육	 메뉴 조리 고객응대 요령 매장운영 방법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실시	영업개시 전, 14일	0
보수교육	· 신메뉴 조리 · 판매Skill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실시	협의 결정, 1일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금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최소일수	교육대상자	비용	비고
신규교육	14일	가맹점사업자 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정인	16,500	출장 여비와 식대는 본인 부담
보수교육	1일		220	교육 실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요청하여 교육 당사자 외 직원이 추가로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상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할 수 없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 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 없음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비고
해당 없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본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21년 ~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